

수신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

(경유)

제 목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홍보 협조요청

1. 귀 협회(충북도회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2022년 12월 1일 시행됩니다.
3. 법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1일 이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·이전·용도변경·대수선하려는 경우, **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소방계획서의 작성,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(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)로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.**
4. **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주관하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(특급·1급·2급·3급 중 어느 하나)을 발급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(3일, 24시간)을 수료해야 하며, 건설현장의 공사 시공자는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,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**
5. 귀 협회의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**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에 대한 홍보를 요청**하오니 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또한, 선임제도 홍보 결과보고를 위해 귀 협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**홍보건수를 10월 31일까지 회신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강습교육 안내 >

○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
-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

1. 연면적 15,000㎡ 이상인 것
2.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것으로서
 - 가. 지하 2층 이하
 - 나. 지상 11층 이상
 - 다. 냉동창고, 냉장창고 또는 냉동·냉장창고

○ 교육신청 : 홈페이지 참고 및 교육지부 문의

-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(PC, 모바일 접속) : www.kfsi.or.kr
- 충북지부 연락처 : 043)237-3119,4119

- 첨 부 : 1. 보도자료(소방청) 1부
2.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팸플릿 1부. 끝.

한 국 소 방 안 전 원 총 청 북 도 지



주임 정광영 과장 이순주 국장 김미경 지부장 장세만
10/24

협조자

시행 충북지부-1587 (2022.10.24.) 접수
우 28620 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502번길 5(성화동) / www.kfsi.or.kr
전화 043-237-3119 전송 043-237-5119 / cookie7654@kfsi.or.kr / 공개

청렴한 당신이 자랑스런 KFSI